

## 한국 긴급중재인 제도의 긴급성과 집행력에 관하여

A Study on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in Korea:  
A Focus on Urgency Inherent and Enforcement

도혜정\*  
Hye-Jeong Do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국내제도
- III. 해외 사례
- IV. 긴급성과 집행가능성
- V.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긴급중재인, 최종성, 연결 규정, 집행력, 긴급처분, 긴급성

---

\* Do Hye Jeong. themoon6@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조정팀

## I .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1일 국제중재규칙에 긴급중재인 제도를 신설하고 2016년 12월 27일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sup>1)</sup>을 제정하며 급변하는 국제분쟁해결 시장에 발 빠르게 적응 중이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긴급중재인제도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간이 보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을 보조하기 위한 긴급절차다.

이 절차가 개발되기 전에는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법원에 긴급 보전절차를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기다려야만 했다. 국제중재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90년 ‘중재 전 중재인제도’(Pre-Arbitral Referee)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긴급중재인의 모태가 되었다. 그 뒤 긴급중재인제도는 처음으로 2006년 미국 중재협회(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이하‘ICDR’/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시작되었고 오늘날 실무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sup>2)</sup>

긴급중재인절차의 흥행은 분명히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자에게 다른 융통성과 자치권을 주지만, 긴급중재인의 법적구조와 관련한 중요 의문과 함께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검증되지 않은 절차다. 본 제도의 당사자를 보조하는 잠재적 능력은 상당하나 발전의 이른 단계에서 당사자가 긴급중재인의 국내외에서의 긴급성 요건과 집행가능성에 관한 한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국내 긴급중재인제도를 간단히 소개한 뒤 해외 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 국내 제도

이전에는 중재판정부가 성립되기 전에는 법원에 신청하지 않고는 임시적 보전처분을 구할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긴급중재인 제도는 2016년부터 국제중재규칙 안에 도입되었다. 다만 2016년 6월 1일 이후 중재합의 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살펴본 뒤 새로 도입된 긴급중재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나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조)

2) R Bose, I Meredith, “Emergency Arbitration Procedures: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Issue 5, Thomson Reuters (Professional) UK Limited and Contributors, 2012, p.187

## 1. 중재법

### (1) 임시적 처분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중재규칙 제28조에서도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한 보전 및 임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중재절차에서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임시적 보전 조치가 효율적으로 중재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sup>3)</sup>

임시처분이 최종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기존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은 뉴욕협약상의 구속력 있는 최종 중재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재법을 2016. 5. 29. 개정해 2016. 11. 30.부터 시행하면서 제18조의 74)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력을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새로이 도입하였다.<sup>5)</sup> 이는 2006년에 개정된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2006년 모델중재법’), art. 17H<sup>6)</sup>을 수용한 것이다.<sup>7)</sup>

### (2) 법원 보전처분

또한 우리 중재법은 중재당사자들에게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중재법 제10조<sup>8)</sup>). 그런데 국내중재의 경우 당사자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그와 병행하여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양한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절차와 병행하여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이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비용, 외국 법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분쟁 사안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9)</sup>

3)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인 국제중재규칙 개정 시행을 맞이하여”, 『계간중재』, 345호, 대한상사중재인, 2016, p. 82

4)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5) 정교화,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p.70

6) Art. 17H (1) An interim measure issued by an arbitral tribunal shall be recognized as binding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 enforced upon application to the competent court, irrespective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ssue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7 I.

7) 정교화, 앞의 글, p.70

8)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10조).

## 2. 긴급중재인제도

### (1) 적용시점

국제중재규칙 제32조 제4항에 신설된 긴급중재인 제도<sup>10)</sup>는 2016년부터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11)</sup> 다른 조항은 중재합의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 하지만 긴급중재인 제도는 2016년 6월 1일 이후 중재합의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sup>12)</sup> 긴급중재인 제도가 어느 한 당사자에게는 권리 보전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제도를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2) 중재신청

국제중재규칙 별표3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이하 ‘긴급처분’) 신청은 중재신청서와 중재합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중재판정부 성립 이전의 공백을 해결하면서 정식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본안 심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sup>13)</sup>

중재판정부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중재인으로부터 긴급처분을 받아 권리 보전을 기하고, 이러한 처분이 추후 중재판정부에 의해 유지된다면<sup>14)</sup> 법원에 별도의 임시 보전처분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중재판정부 구성 전부터 최종적인 권리구제절차 종료 시까지 유효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5)</sup>

### (3) 기간

중재신청과 동시에 또는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당사자가 긴급 중재인선정을 요청하면 2영업일 안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고<sup>16)</sup>, 그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sup>17)</sup>에 당사자

9) 정교화, 앞의 글, p.70

10) 이 규칙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 전에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필요로 할 경우 별표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긴급한 보전 및 임시적 처분을 구할 수 있다(국제중재규칙 제32조 제4항).

11) 국내중재규칙과 중재법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12) 긴급중재인 제도 도입 이후에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만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이 있다. 이전 국제중재규칙은 2011년 9월 1일 이후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분쟁이 국제중재에 해당하면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중재원에 접수되는 분쟁이 국제중재에 해당되면 당사자의 중재합의 날짜에 상관없이 접수일 기준으로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적용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긴급중재인과 당사자추가에 관한 규정만 예외로 시행일 이전의 중재합의인 경우 개정 이전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13) 우리나라처럼 긴급처분의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중재신청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만 긴급중재인에게 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중재신청 제기 전이라도 긴급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 긴급중재인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기관도 있다. 미국 중재협회(AAA)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ch.1(1))가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스톡홀름상업회의소(SCC Article 32)와 국제상업회의소(ICC Arbitration Rules, App. V. Article 1.)의 경우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4)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국제중재규칙 별표3 제4조 제1항).

15) 정교화, 앞의 글, p.70.

에 구속력이 있는 긴급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신속성을 보장하였다.<sup>18)</sup>

#### (4) 구속성

별표3 제3조 제5항은<sup>19)</sup>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에 당사자들이 구속된다고 명시한다. 또한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을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긴급처분의 집행력이 문제된다.

#### (5) 긴급성

긴급중재인 권한에 대한 국제중재규칙 별표3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sup>20)</sup> 보전 및 임시적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긴급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처분의 긴급성 요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3. 정리 및 검토

긴급중재인제도는 아직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긴급처분의 요건과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긴급중재인이 내린 긴급처분의 집행력에 대해 법원이 어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 하다. 중재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중재규칙에 근거해 긴급중재인이 내릴 긴급처분의 긴급성 요건과 집행가능성 문제를 중재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국제중재규칙 별표3 제3조 제2항.

17) 국제중재규칙 별표3 제3조 제4항.

18) 김태훈, 앞의 글, p.82

19) 별표3. 제3조 제5항 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이 결정을 내린 긴급처분에 구속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된다.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별표3 제4조 제2항에 따라 긴급처분을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20) 별표3. 제3조 제1항 긴급중재인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처분을 내리고, 이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Ⅲ. 해외 사례

#### 1. 해외 국제중재기관

해외 중재기관들은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스톡홀름 상공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이하 SCC), 스위스 중재 기관(SCAD),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Nacional Chambers of Commerce, CANACO), 미국 중재협회(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와 국제중재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등 여러 기관들이 긴급중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21)</sup>

이중 긴급중재인을 처음으로 도입한 ICDR, 아시아 지역에서 긴급중재인을 처음 도입한 SIAC, 긴급중재인의 모태인‘중재 전 중재인제도’를 시작한 ICC, 긴급중재인의 판단기간이 가장 짧은 SC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통점

###### 1) 선택제외(Opt-out)

ICC 긴급중재인의 첫 번째 주요 원칙은 선택제외(Opt-out)방식이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긴급중재인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ICC외에 ICDR, SIAC, SCC 모두 선택제외(Opt-out)방식을 따른다. 실무적 효과로 긴급중재인절차를 더 넓게 분쟁당사자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긴급중재인 보전절차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칙은 ICC의 1990년 ‘중재 전 중재인제도’(Pre-Arbitral Referee)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선택수락(Opt-in)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법원과의 관계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 이후에 사법기관에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은 이 규칙과 상충되지 아니한다(ICDR Rule 6.7; SIAC Rule 6th 30.37; ICC Rule 29.7).

---

21)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87.

### 3) 중재판정부와의 관계

후에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어떠한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법적 보호가 제공된다. 중재판정부는 다시 심리하여,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절차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SIAC Rule 6th Sch.1.7; ICC Rule 29.3; SCC Rule APPENDIX II 9.5).

### 4) 긴급중재인 권한

긴급중재인에게 필요한 보전절차 판정을 내릴 넓은 자유재량권을 제공한다.(ICDR Rule 6.4; SIAC Rule 6th Sch.1.8; ICC Rule APPENDIX V 5.2; SCC Rule APPENDIX II 1.2) 그러나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ICDR 6.5; SIAC Rule 6th Sch.1.10; ICC Rule APPENDIX V 2.2; SCC Rule APPENDIX II 1.2)

### 5) 진실된 긴급성 필요

긴급중재인 제도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가 진실로 중재판정부의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때에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힌다. ICC와 SIAC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입시처분이 필요한 경우’(ICC Rule 29.1; SIAC Rule 6th 30.2)를 규정하고 있다. SCC는 ‘본질적인 긴급성’(urgency inherent)을 고려하도록 한다.(SCC Rule APPENDIX II, Art.7),

## (2) 사례

2015년 3월 6일 기준으로 ICDR은 49건의 긴급중재인이 신청되어 24건은 보전절차를 구했다<sup>22)</sup>. SIAC<sup>23)</sup>는 2010-2015년 3월까지 42건, ICC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건이 신청되었다(2012년에 2건, 2013년과 2014년에 각 4건). SCC는 2010-2014년까지 13건이 신청되어 3건만 성공했다. SCC는 긴급성, 급박한 위협, 제3자에 대한 구속력 문제로 인해 10건을 거절했다. ICDR는 평균적으로 신청 후 25일, SIAC는 심리 후 약 8일, SCC는 신청 후 평균 5-6일 걸린다.<sup>24)</sup>

22)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중재인제도는 도입 후 2012년 6월까지 21번 사용되었다(김도훈,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소고-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2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 제62호, p.203.

23) SIAC와 SCC 두 기관의 제도 모두 2012년 6월 까지 각각 7번씩 사용되었다. 김도훈, 앞의 글, p.203.

24) Vasani, S. Z., “The Emergency Arbitrator: Doubling as an Effective Option for Urgent Relief and an Early Settlement Tool”, The King & Spalding Energy Newsletter, 8 May (2015), Retrieved Nov. 22, 2017, from <https://s3.amazonaws.com/documents.lexology.com/9811ecfc-4e77-4e81-bc06-38ed08cb0e45.pdf>

### (3) 각 기관별 특징

#### 1) ICDR

미국중재협회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가 최초로 긴급절차를 다루기 위한 규정으로 2006년 5월 1일 국제중재규칙에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를 제37조에 도입하였다. 긴급중재인제도는 ICDR을 중재법으로 하여 중재하는 당사자들에게 긴급보전절차를 위해 중재패널 구성 전에 심리할 수 있는 긴급중재인을 선정할 권원을 주었다.<sup>25)</sup> 최근에는 2014년 7월 1일에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긴급중재인 제도는 규칙 제6조에 구체화되었다.

#### 가. 기간

긴급중재인은 신청 후 1영업일 안에 선정(ICDR 6.2)하고 2일 내 심리기간을 잡는다(ICDR 6.3). 2015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25일, 2012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1일 걸렸다. 그리고 21건의 사건 중 집행문제는 한건도 없었다.<sup>26)</sup> 2009년 기준으로 보통 36시간 안에 긴급중재인이 선정되고 2주정도면 결정이 내려졌다.<sup>27)</sup>

#### 나. 보전조치와 동일한 효과

2014년 개정하면서 ICDR 규칙 제6조 제4항에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임시적 처분과 동일하다(Any interim award or orde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interim measure)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미국은 뉴욕협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종 판정에 임시적 보전처분을 포함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므로 규정적으로도 집행가능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 생각된다.<sup>28)</sup>

#### 다. 규정형식

미국 중재협회(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의 긴급중재인제도 도입 이후 다른 여러 국제중재기관에서 순차적으로

25) 안건형, 이동수, 오원석,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p.133.

26) Louise Barrington, “Emergency arbitrators: can they be useful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7, No. 2,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2012, pp.40-42.

27) Lemenez, G. and Quigley, P.,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November 2008/January 2009, 2008, p.8.

28) 개정 전 37.5. The emergency arbitrator shall have the power to order or award any interim or conservancy measure the emergency arbitrator deems necessary, including injunctive relief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r conservation of property. Any such measure may take the form of an interim award or of an order. The emergency arbitrator shall give reasons in either case. The emergency arbitrator may modify or vacate the interim award or order for good cause shown.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또한 중재인 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부칙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중재규칙에서 임시적 처분에 대해 대부분의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중재인 제도를 도입한 SCC, SIAC 및 ICC 등 여타 국제중재기관과 구별된다.<sup>29)</sup>

## 2)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2010년 1월1일 개정된 SCC는 탄탄한 긴급중재인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2010년 1월 1일 이전 중재합의에도 긴급중재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소급규정이 특징적이다. 새로운 소급규정 2010년 개정 이후 2017년 1월 개정되었는데 APPENDIX II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 가. 기간

긴급중재인은 24시간 내에 선정되며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APPENDIX II 4.1). 그러나 긴급중재인선정 이전에 SCC는 APPENDIX II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 긴급보전절차는 긴급중재인에게 사건이 송부된 지 5일 이내에 결정(APPENDIX II 8.1)되어야 하고 적절한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5일 기간은 긴급중재인의 요청이나,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가령 피고가 제공되지 않거나, 통지가 오래 걸릴 경우에 의회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다. <sup>30)</sup>

### 나. 소급규정

SIAC나 ICC규칙처럼, SCC규칙도 긴급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에 적용된다. 유사하게 규칙은 상대방 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SCC규칙은 긴급중재인에 대해 기피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더 나아갔다. 이는 당사자들이 SCC 규칙에서 2010년 1월 1일 이전 중재합의에도 긴급중재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소급규정은 중재커뮤니티에 중대한 의견과 논쟁을 불러왔다.<sup>31)</sup>

### 다. 긴급처분 장애사항

SCC 규칙 하에서 긴급중재인절차를 적용한 경우는 규칙 시행부터 2012년 6월 1일까지 7개다. 2010년과 2011년 SCC규칙상 긴급중재인의 이점을 이용하려는 6개 사건이 있었다.

29) 주이화, 배상필, 심상렬, “중재관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 제도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p.223.

30)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90.

31)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89.

긴급중재인을 적용한 주된 4가지 사건은 2010년에 발생하였으며 한 개의 사건만 긴급처분을 인정하였다. 거절당한 세 개의 사건 중 두 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긴급성’ 요건을 결정의 인정요건으로 분명히 제시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다른 한 개는 최종적 중재판정에 가깝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sup>32)</sup>

###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0년 7월 1일부터 SIAC중재규칙(4th) 26.2에 긴급중재인 제도를 신설했다.<sup>33)</sup> 2016년 8월 1일 개정된 SIAC중재규칙(6th)은 30.2에 긴급중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sup>34)</sup> 별지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하면서 불명확성을 보완하였다.

#### 가. 기간

중재법원장은 긴급중재인 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되어 관리 수수료와 예납금이 납입된 후 1일 이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Sch.1.3).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후 2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긴급임시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Sch.1.7), 긴급중재인은 선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명령 또는 임시판정을 내려야 한다(Sch.1.9).

#### 나. 구속력

Sch.제1조 제12항은 긴급중재인이 내린 명령 또는 판정이 선고됨과 동시에 구속력이 있으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에 든 어떤 형식의 항고나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도 할 수 없다고 구속력을 분명히 한다.

#### 다. 긴급성 및 최종성

과거에는“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고유의 긴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이 규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적절히 적용될 지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4th.Sch.1.11).”고 규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칙은 신청된 절차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별지 1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칙의 적절한 적용 방식에 대하여선 긴급중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항고,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무국은 제30조 제2항과 별지1조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2) 안건형, 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1, p.80.

33) SIAC Rules (2010) Sch.1(1).

34) 2016.8.1. 개정된 제6차 싱가포르국제중재규칙 한국번역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접속일 2017. 9. 20, <http://www.siac.org.sg/our-rules/rules/siac-rules-2016>

(6th.Sch.1.14).”고 하여 최종성을 확인한 점은 공통적이지만 6th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4) 국제중재상업회의소(ICC)<sup>35)</sup>

##### 가. 중재 전 중재인제도(Pre-Arbitral Referee)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임시적 처분을 위한 긴급절차를 처음 도입한 국제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CC)라 할 수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90년 ‘중재 전 중재인제도’(Pre-Arbitral Referee)를 도입하였다.<sup>36)</sup> 사용한 긴급중재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을 위해 중재 전 중재인이 선임되고, 선임된 중재 전 중재인이 보호처분, 담보제공, 증거보전 등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긴급중재인과 다를 바 없다.<sup>37)</sup> 따라서 이것은 주요 기관의 중재판정부 구성 전 긴급보전절차를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중재 전 중재인 제도가 도입 후 10년 동안 사용되지 못한 이유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서면)를 요하는 이른바 선택수락(Opt-In) 방식이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 나. 긴급중재인 제도

이후 1998년 ICC규칙은 긴급수단이 법원에서 곤장 이뤄지도록 규정을 개정한 반면, 2012년 1월 1일 에는 긴급수단을 위한 내부 구조를 개정해 긴급중재인 제도를 시행했다.<sup>38)</sup> 가장 최근에는 2017년 3월 1일 신속절차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개정했다.<sup>39)</sup> ICC의 긴급중재인은 Art. 29에서 규정하고 있다.

##### (가) 기간

신청 후 최대한 빨리 선정하되 늦어도 2일 내에 긴급중재인을 선정하고(Appendix V2.1)<sup>40)</sup>, 긴급중재인에게 서류가 송달된 후 15일내 결정된다(Appendix V6.4).<sup>41)</sup>

35) ICC Art. 29.6에 따르면 긴급중재인 제도를 적용대상인 중재합의는 2012년 1월1일 이후에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36) 1990년 1월 1일 발효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2005년까지 접수된 사건 수가 5건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주이화, 배상필, 심상렬, 앞의 글, p.226 참고.

37) 김도훈, 앞의 글, p.201.

38)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88.

39)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7 Arbitration Rules and 2014 Mediation Rules, <https://iccwbo.org/publication/arbitration-rules-and-mediation-rules/> (최종방문일 2017. 9. 20.)

40) The President shall appoint an emergency arbitrator within as short a time as possible, normally within two days from the Secretariat’s receipt of the Application.

41) 4) The Order shall be made no later tha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file was transmitted to the emergency arbitrator pursuant to Article 2(3) of this Appendix. The President may extend the time limit pursuant to a reasoned request from the emergency arbitrator or on the President’s own initiative if the

### (나) 형식

Art. 29.2에서 긴급중재인 결정의 형식을 명령(order)으로 정하고 있다(form of an order). 보통 다른 나라는 ‘판정(award)’ 또는 ‘명령(order)’으로 정하고 있다. ‘명령(order)’의 형식이 뉴욕협약에서 집행을 인정하는 ‘판정(award)’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2. 정리 및 검토

ICC를 비롯한 해외중재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긴급 보전절차를 빠르고 적절히 진행한다. 그러나 긴급처분의 긴급성 요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의 법적 효력이 법률상 여전히 모호하고, 특히 집행에 관해서 그러하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외 국제중재 기관들은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가령 긴급성 요건에 대해서 SCC는 결정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긴급조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집행력에 관해서 SIAC는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최종성을 명문화하여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긴급중재인 제도의 긴급성 요건과 집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IV. 긴급성과 집행가능성

### 1. 긴급성

국제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제도에서 긴급성 요건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은 찾기 힘들다. 긴급성에 관하여 SCC는 ‘본질적인 긴급성’(urgency inherent)을 고려하도록 하며(SCC Rule APPENDIX II, Art.7<sup>42</sup>), ICC와 SIAC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임시처분이 필요한 경우’(ICC Rule 29.1<sup>43</sup>, SIAC Rule 6th 30.2)를 규정하고 있을

President decides it is necessary to do so.

42) Article 7

Article 23 of the Arbitration Rules shall apply to the emergency proceedings, taking into account the urgency inherent in such proceedings.

43) Article 29.1

A party that needs urgent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s that cannot await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Emergency Measures”) may make an application for such measures pursuant to the Emergency Arbitrator Rules in Appendix V. Any such application shall be accepted only if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iat prior to the transmission of the file to the arbitral tribunal pursuant to Article 16 an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has already submitted its Request for Arbitration.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보전 및 임시적 조치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제중재규칙 제3조 제1항<sup>44)</sup>)

그러나 한국의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조치의 사례는 거의 없다. 2017년 말레이시아 국적의 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중재비용 및 변호사비용 보전조치(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례가 유일하다. 피신청인은 국제중재규칙 제3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의 필요성이 현저하고, 중재비용 및 변호사비용의 부담 결정도 중재판정의 일부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납한 중재비용 및 변호사비용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법 제18조 및 규칙 제32조 제1항을 제시하며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다. 따라서 기존 사례로는 긴급중재인의 긴급 처분 요건을 유추하기 어렵다.

## 2. 집행가능성

집행력의 경우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에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찾을 수밖에 없으나 법원에 의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sup>45)</sup> 가령 ICC규칙에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명령의 형식으로 내려진다(Appendix V. Art.29.2, 6.1). 이는 당사자들을 구속하지만(Appendix V. Art.29.2, 6.6), 긴급중재인의 명령의 집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그 명령이 Art.28.1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보전절차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불명확하다.<sup>46)</sup> 특히 모델 중재법과 뉴욕협약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 (1) 2006년 모델 중재법

2006년에 개정된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2006년 모델 중재법’) 제17H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의 집행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7H, 17I에 따라 그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가능하다. 모델 중재법은 1999년 중재법처럼 임시적 처분을 결정 형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중재판정 또는 다른 형식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가 내린 임시처분(interim measure)만이 집행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에 긴급중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sup>47)</sup>

44) 제3조 ① 긴급중재인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처분을 내리고, 이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45) 김도훈, 앞의 글, p.217.

46)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87.

47) KCAB는 1996년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동 규칙의 법적근거는 종전 KCAB의 상사중재규칙 제9조 3항에서 정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관리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근 중재법을 2016. 5. 29. 개정 2016. 11. 3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sup>48)</sup> 이 때 2006년 UNCITRAL 모델 중재법을 수용했다.<sup>49)</sup> 따라서 제17H조의 중재판정부에 긴급 중재인이 포함된다면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의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델 중재법(제17조H 제1항)은 중재지를 불문<sup>50)</sup>하므로 뉴욕협약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나<sup>51)</sup>, 2016년 중재법은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에만 적용된다(제2조 제1항).<sup>52)</sup>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별표3의 제3조 제5항은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시점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 및 임시처분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는 중재법 제18조의 7에 따라 긴급처분이 집행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는 집행여부가 불분명하다.

## (2) 뉴욕협약

우리나라는 1973년 2월 8일 뉴욕협약<sup>53)</sup>에 가입하였고 동 협약은 1973년 5월 9일부터 발효되었다. 뉴욕협약은 판정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내려졌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협약 제3조).<sup>54)</sup> 따라서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의 집행을 위해 뉴욕협약규정 및 관계된 지역 법제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게 된다.<sup>55)</sup>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처분도 뉴욕협약이나 법제에 따라 판정으로서 인정되어 집행가능한지 여부가 질문될 수 있다.

중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상사중재규칙이 2011년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으로 구분 개정 시행될 때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때문에 그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UNCITRAL 중재를 진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김광수, “우리나라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UNCITRAL 중재규칙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p.12.

48) 1966년 처음 제정된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의 전면 도입을 계기로 1999년 전부개정되었고, 2016년 다시 개정되어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중재법을 통하여 UNCITRAL 개정 모델법을 수용하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였다.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초록 참조.

49) 석광현,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p.215.

50) Article 1. Scope of application 1.

(1) This Law appli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sup>2</sup> arbitration, subject to any agreement in force between this State and any other State or States.

(2) The provisions of this Law, except articles 8, 9, 17 H, 17 I, 17 J, 35 and 36, apply only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in the territory of this State.

(Article 1(2) has been amended by the Commission at its thirty-ninth session, in 2006).

51) 중재법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5.29.]

52) 석광현, 2017, 앞의 글, p.238.

53)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54) 이기수,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6판』, 세창출판사, 2015, p.522.

55)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88.

### 1) 최종성

긴급중재인이 중재판정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6년 모델 중재법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여전히 긴급중재인의 임시처분을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판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담보해 온 뉴욕협약 체제하에서 우리 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원은 중재판정을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판정으로 해석해 왔다. 그런데 여러 해외 중재 규칙은 ‘중재판정부는 다시 심리하여,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절차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sup>56)</sup>는 규정을 갖고 있기에 긴급중재인의 긴급처분은 그 성격상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긴급중재인이 ‘판정’ 형태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승인과 집행의 대상인 구속력 있는 최종 판정(뉴욕협약 제5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sup>57)</sup>

#### 가. 미국

미국 법원은 임시적인 보전조치라도 Federal Arbitration Act와 뉴욕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집행력과 관련된 ‘최종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sup>58)</sup> 최종적 중재판정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중재인이 내린 보전조치의 집행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British Ins. Co., 93 F. Supp. 2d at 516).<sup>59)</sup>

#### (가) 대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태도의 우호적 변화<sup>60)</sup>

1984년 대법원은 의회가 미국의 연방 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이하, ‘FAA’)를 제정한 주요 목적이 ‘오랜 중재에 대한 사법적 적개심’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outhland Corp. v Keating, 465 U.S. 1, 14 (1984)). 법원은 그 후 미국의 법원이 중재 합의와 중재판정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중재과정에 법원의 개입을 제한하는 FAA에 기초하여 넓게 ‘중재 친화적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는 다수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태도 때문인지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의 범위에 대해서 관대하다.

56) SIAC Rules (2010) Sch.1(7).

57) 정교화, 앞의 글, 85면.

58) Lemenez, G. and Quigley, P., *ibid.*, p3. 중재판정 또는 명령이 집행력을 인정받거나 사법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집행력과 관련된 ‘최종성’과 사법 심사를 위한 ‘최종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9) 모든 경우 최종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가령 사법 심사를 받을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종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련 중재판정 또는 명령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Yonir Technologies, Inc. v. DURATION SYSTEMS (1992) LTD., 244 F. Supp. 2d 195 (S.D.N.Y. 2002)

60) Born, G.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14), Second Edition, pp.3113-3121, 발췌 요약.

### (나) “명령”과 “판정”의 형식적 구별

2015년 기준으로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긴급중재인제도에서 집행이 문제가 된 예는 아직까지 없다. ICDR 긴급중재인규정은 적용이 있던 몇 년 동안 “명령”과 대조적인 “판정”의 집행력, 긴급중재인의 간이결정이 뉴욕협약의 요건에 맞는지 여부 등이 미국법원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명령은 “최종적”이지 못해서 판정만이 미국에서 집행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명령”과 “판정”의 형식적 구별을 거절했다. In *Publicis Communication v True North Communications* 7th circuit에서 명령형태로 내려진 보전절차를 집행하기를 원했다. 명령의 본질과 그 성격 두 가지에 대해 불복이 있었고, 당사자는 명령이 미국연방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요건에 맞는 최종판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령도 결정의 일부라고 했고 최종성을 결정하는 명명법이 아니라고 했다. 이 판례를 바탕으로 많은 해설자들이 미국법원은 ICDR 규칙 제6조(개정 전 제37조)에 따른 어떠한 보전절차라도 명령인지 판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하려고 한다고 결론지었다.<sup>61)</sup> 더 나아가 미국은 2014년 개정 ICDR 국제중재규칙 제6조 제4항에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보전조치와 동일하다(Any interim award or order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interim measure)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긴급중재인 제도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공고히 했다.

### 나.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86년 뉴욕협약을 비준했다. 국제중재법에서도 해외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인정한다.<sup>62)</sup> 2012년에 국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중재판정부의 정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긴급중재인을 포함시켰다.<sup>63)</sup> 국제중재법은 ‘판정’에도 보전절차가 포함되며,<sup>64)</sup> 중재판정부의 모든 명령 및 결정은 법원이 내린 것과 동일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5)</sup> 따라서 긴급중재인이 내린 결정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인정되어 법원이 내린 것과 동일하게 집행이 보장된다. 더 나아가 SIAC는 개정규칙에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항고,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61) Bose, R. and Meredith, I, *ibid.*, p.192.

62)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29.-(1) Subject to this Part, a foreign award may be enforced in a court either by action or in the same manner as an award of an arbitrator made in Singapore is enforceable under section 19.

63) Interpretation of Part II 2.-(1) In this Par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rbitral tribunal” means a sole arbitrator or a panel of arbitrators or a permanent arbitral institution, and includes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pursuant to the rules of arbitration agreed to or adopted by the parties including the rules of arbitration of an institution or organisation; [Act 12 of 2012 wef 01/06/2012]<http://www.siac.org.sg/our-rules/international-arbitration-act> (retrived 2017. 9. 20.).

64) 2(1)“award” means a decis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n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and includes any interim, interlocutory or partial award but excludes any orders or directions made under section 12;

65) 12(6) All orders or directions made or given by an arbitral tribunal in the course of an arbitration shall, by leave of the High Court or a Judge thereof, be enforceable in the same manner as if they were orders made by a court and, where leave is so given, judgment may be entered in terms of the order or direction.



### 3. 해결방법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의 긴급처분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으로서 집행 될 수 있다. 물론 기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은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기 보다는 별도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서 유명무실했다. 다행히 2016년 중재법 개정을 통해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집행력은 공고해 졌으며 앞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긴급중재인 제도의 취지상 법원이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집행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긴급중재인 절차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긴급성 요건과 긴급중재인의 명령 또는 판정이 집행가능한지 여부의 불명확성이다. 이런 문제점은 해외기관들이 접근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 (1) 긴급성

SCC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판단한 뒤, 긴급성을 충족시킬 별도의 요건을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 심각한 위험 또는 긴급처분으로 방지 가능한 회복불가능한 손해, 중재판정부 구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긴급성, 신청자의 잠재적 손해와 피신청자가 입을 피해 간의 균형을 예로 든다. 우리나라도 임시적 조치와는 다른 본질적인 긴급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를 규정화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 (2) 집행력

##### 1) 2006년 모델 중재법 활용

2006년 모델 중재법 제17H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의 집행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6년 모델 중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중재규칙 또는 중재법에 추가되면 될 것이다.

##### 2) 뉴욕협약의 최종성 인정

SIAC는 개정규칙에 긴급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항고, 재심 청구 또는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긴급중재인의 결정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법원에서 해석상 긴급처분의 최종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기타

2006년 모델중재법이나 뉴욕협약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긴급중재인 제도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나라로 홍콩을 들 수 있다. 홍콩의 경우 2013년 7월 19일 발효된 개정 중재법(Arbitration Ordinance)을 통해 홍콩 내 또는 홍콩 밖에서 이루어진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은 홍콩법원에서 내린 결정과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고, 홍콩 법원에 대한 신청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66)</sup> 우리나라도 긴급처분에 대한 집행력을 직접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마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중재인 제도는 국제중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집행가능성을 떠나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구성 된 뒤의 본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긴급중재인 제도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운영된다.<sup>67)</sup> 따라서 긴급중재인을 받아들여 규칙을 수정한 대부분의 중재기관에서 탄력과 유행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에 대한 의심이 궁극적인 수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제중재규칙으로 긴급중재인절차를 받아들였으나 긴급성과 집행력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대륙법계인 한국에서 긴급중재인의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내 사법시스템 하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법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sup>68)</sup>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긴급중재인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이행할 가능성도 커진다. 중재법 개정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의 예를 참고 할 수 있다. 가령 싱가포르는 중재법에 중재판정부의 정의를 넓혀서, 홍콩은 긴급중재인이 내린 보전조치가 홍콩 내외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Part A를 중재법에 삽입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sup>69)</sup> 또는 미국 ICDR처럼 국제중재규칙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66) 홍콩 Arbitration Ordinance(ch. 609), sec. 22B에 의하면 “Any emergency relief granted, whether in or outside Hong Kong, by an emergency arbitrator under the relevant arbitration rules is enforceable in the same manner as an order or direction of the Court that has the same effect, but only with the leave of the Court” 라고 규정하고 있다(정교화, 앞의 글, 88면).

67) Lye, K. C. and Leong, S., “Emergency Arbitrators in Singapore”, Emergency Arbitrators in Singapore, 3, Norton Rose Fulbright, 2014, p.17.

68) Savola, M., “Interim Measures and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s”, Presentation at the 23rd Croatian Arbitration Days: Access to Arbitral Justice Part IV: Time Aspects of Access to Arbitral Justice, Zagreb, Croatia, December 3-4, Permanent arbitration court, 2015, p.26.

69) Lye, K. C. and Leong, S.,, ibid., p.17.

긴급중재인은 긴급성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 긴급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은 우리나라를 중재친화적인 국가로 인식할 것이며 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수, “우리나라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UNCITRAL 중재규칙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39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14.
- 김도훈,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소고-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에 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제62호,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3, 제62호
- 김상찬, 김유정,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
-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시행을 맞이하여”, 『계간중재』, 제345호, 대한상사중재원, 2016.
- 석광현,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_\_\_\_\_, “중재법의 개정방향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안건형, 이동수, 오원석,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의 긴급중재인 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 안건형, 김성룡,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한국중재학회, 2011), 제21권 제2호, 65-83면.
- 윤남근, “개정 국내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취지”, 『계간중재』, 제346호, 대한상사중재원, 2016.
- 이기수,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6판』, 세창출판사, 2015.
- 신희택, “국제중재발전을 위한 제언”, 『계간중재』, 제341호, 대한상사중재원, 2014.
- 정교화,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평론』, 제5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5.
- 주이화, 배상필, 심상렬,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 제도 비교 연구”, 『중재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2.
- Barrington, L., “Emergency arbitrators: can they be useful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7, No. 2, 2012.
- Bose, R. and Meredith, I., “Emergency Arbitration Procedures: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Review, 5, 2012.
- Born, G.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14), Second Edition.
- Lemenez, G. and Quigley, P., “The ICDR’s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tion”,

- Dispute Resolution Journal, November 2008/January 2009, 2008.
- Lundstedt1 Johan, “SCC Practice: Emergency Arbitrator Decisions 1 January 2010 - 31 December 2013”, Retrieved May, 29, 2018, from [http://www.sccinstitute.com/media/29995/scc-practice-2010-2013-emergency-arbitrator\\_final.pdf](http://www.sccinstitute.com/media/29995/scc-practice-2010-2013-emergency-arbitrator_final.pdf)
- Lye, K. C. and Leong, S., “Emergency Arbitrators in Singapore”, Emergency Arbitrators in Singapore, 3, Norton Rose Fulbright, 2014.
- Savola, M., “Interim Measures and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s”, Presentation at the 23rd Croatian Arbitration Days: Access to Arbitral Justice Part IV: Time Aspects of Access to Arbitral Justice, Zagreb, Croatia, December 3-4, Permanent arbitration court, 2015.
- Vasani, S. Z., “The Emergency Arbitrator: Doubling as an Effective Option for Urgent Relief and an Early Settlement Tool”, The King & Spalding Energy Newsletter, 8 May (2015). Retrieved Nov. 22, 2017, from <https://s3.amazonaws.com/documents.lexology.com/9811ecfc-4e77-4e81-bc06-38ed08cb0e45.pdf>
- Villani, A. and Caccialanza, M., “Interim Relief through Emergency Arbitration: An Upcoming Goal or Still an Illusion?” (2017) Retrieved Sep. 23, 2017, from <http://kluwerarbitrationblog.com/2017/07/14/interim-relief-emergency-arbitration-upcoming-goal-still-illusion/>

## ABSTRACT

### A Study on the Emergency Arbitrator Provisions in Korea: A Focus on Urgency Inherent and Enforcement

Hye-Jeong Do

Two years ago,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 has been finally adopted in Korea—a decade after its introduction. Arbitral institutions provide interim measures in the course of tribunal proceedings to avoid litigation in open court that is often expensive and time-consuming. An 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 offers an urgent relief prior to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thus enhancing the speed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even further.

Although most of the arbitral institutions interpret that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are binding on the parties,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provisions have some difficulties in practic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or not arbitral interim measures will be enforceable under the newly adopted provisions in Korea.

In this study, experiences in other countries are explored in seeking for the possible problems and solutions of enforcing the emergency arbitration rulings. For example, Singapore and Hong Kong insert terms such as “finality,” “enforceable in the same manner as an order or direction of the Court,” “same effect as an arbitral tribunal or interim measures” in their emergency arbitrator legislation to enhance enforcement. Moreover, “urgency inherent” are considered.

**Key Words** : Emergency Arbitrator, Finality, Enforcement, Urgent Relief, Urgency Inherent